

#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및 융합한의과학과 학사운영지침

제정 2025. 12. 12.

**제1조(목적)**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및 융합한의과학과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전공과목 개설)** ① 한의학과 전공과목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각 교실에서 개설한다.

② 융합한의과학 전공과목은 융합한의과학과 참여교원들의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할 경우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각 교실에서 개설할 수 있다.

**제3조(한의학 학술학위 운영위원회)** ① 한의학 학술학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한의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, 융합한의과학과장,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장,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
2. 전공의 신설 및 폐지 심의
3. 학과별 모집인원 배정 심의
4. 교육과정 관련 제반 활동
5. 학위논문 관련 제반 활동
6. 학사운영지침 개정 심의

**제4조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** 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3과목, 박사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

② 출제, 감독 및 채점은 과목 담당교수가 한다.

**제5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및 심사과정)**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.

②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에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[SCI, SCIE, SSCI, A&HCI]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(확정)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논문은 학위청구 학생과 지도교수가 주저자이면서, 박사과정 입학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발표된 논문만을 인정한다.

③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6개월 전, 지도교수의 승인

을 받은 학위청구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계획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2주전까지 ‘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위원회’ 위원장의 주도 하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.

- ④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심사 시 대학원생은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,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신입생 배정)** ① 박사과정 학생 배정은 각 학과별로 배정한다.

- ② 박사과정 학생 배정시 각 학년별 교수 1인당 1명으로 제한한다. 다만, 총장의 승인으로 2명까지 가능하다.  
③ 정년퇴임까지의 재직잔여 기간이 2년 이하인 교수에게는 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준용규정)**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, 학사운영규정,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.

부칙 (2025. 12. 12.)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지침의 폐지) 이 지침의 시행으로 「일반대학원 한의학과 학사운영지침」은 폐지한다.